

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27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시·도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보조금 집행 주체도 시·도지사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).

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

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 등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 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 등은”으로, “경비중”을 “경비 중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7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· ② (생 략)	제7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· ② (원안과 같음)
③ <u>시·도 교육감 또는 시·도 지사는</u>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③ ----- <u>시·도 지사</u> 등은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원안과 같음)
⑤ <u>시·도 지사는</u> 제2항에 따른 <u>경비중</u> 보조금 집행 실적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⑤ <u>시·도지사</u> 등은----- ---- <u>경비 중</u> ----- ----- -----.

영유아특별회계법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6.

발 의 자 : 문정복 · 김영호 · 민형배
진선미 · 김준혁 · 모경중
박 정 · 고민정 · 김영환
강준현 · 이재정 · 김태선
이재관 · 백승아 · 김문수
정을호 · 박홍배 · 양문석
조계원 · 이병진 · 손명수
이용선 · 김남희 의원
(23인)

제안이유

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,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.

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은 폐지하고,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.

주요내용

가. 영유아 교육·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

계를 설치하고,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·운용하도록 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(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%를 기본 전입, 추가 전입 가능), 다른 특별회계·기금 전입금,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(안 제3조, 제5조 및 제6조).

다.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·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·지원 경비,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(안 제4조).

라.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·무상보육 비용의 시·도 지원금은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·도 교육감이 편성·집행하도록 하고,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·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, 목적 외 사용 금지·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(안 제7조).

마.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(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 특례),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).

바.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,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폐지, 잉여금·관리·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(부

칙 제1조부터 제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시·도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의 보조금 집행 주체도 시·도지사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조제3항 및 제5항).

영유아특별회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영유아 교육·보육의 질을 높이고,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) 영유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는 교육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제6조에 따른 차입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,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

3.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4.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정부는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.

제6조(차입금)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·도 교육감

이 편성·집행하도록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·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중 일부를 시·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시·도 교육감 또는 시·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시·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세출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10조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폐지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.

제4조(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
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.

③ 이 법 시행 전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4호 중 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”를 “영유아특별회계”로 한다.

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5조제1항”을 “「영유아특별회계법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한다.